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659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조상원

변론 종결 2020. 6. 18.

판결 선고 2020. 8. 13.

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소436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91,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C와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트리트 공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원고와 C는 2016. 10.경부터 피고의 고양시 일산 동구 E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경 공급자를 'D', 공급받는 자를 피고, 품목을 철근콘크리트 공사노무비로 하여 '작성일 2016. 11. 22. 공급가액 7,000만 원, 합계 7,700만 원', '작성일 2016. 12. 21. 공급가액 8,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C 등 D의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D의 근로자들이 월 20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해 각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출역일수를 월 19일 이하로 신고하였고 월 19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1억 5,000만 원의 공사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에 다른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것처럼 C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원고는 이로써 별지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건강보험료가 각 증액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10,591,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D'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D'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C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6. 7. 24., 2016. 7. 27. 피고에게 개별 근로자의 일용노임 등이 아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고와 그 대금을 조율하였던 점,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20억 원에 하도급받을 것을 제안받았으나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이를 거절한 결과 피고가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측이 2016. 7. 27. 보낸 견적서의 총 공사비는 1,908,909,500원이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 뿐 아니라 자재비, 장비비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은 'D'의 공동운영자 C의 진술로써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 주장의 손해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면 이를 취소하여 손해발생을 회피할 수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강문희, 판사 김현성

[표]

가. 부가가치세 대금 1500만원(갑제2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나. 소득세 증가분 7,516,120원(종합소득세 6,832,845 + 지방소득세 683,284원)(갑제9호증의 1, 2)

다. 국민연금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금 1,771,600원(갑제10호증의 1)을 제외한 사용자 부담금 1,636,210원(갑제10호증의 2)

라. 건강보험료 증액분 (1) 2017. 11월, 12월 396,100원[198,050원(증액분 368,540원- 당초분 170,490원) × 2개월](갑제11호증), (2) 2018. 1.월부터 2018. 5.월분까지 합계 1,042,900원[208,580원(증액분 379,070원 - 당초분 170,490원) × 5개월](갑제12호증), (3): (1),(2) 합계 1,439,000원

마. 가.+ 나. +다. +라. = 합계 25,591,330원

